

# 한국 상담가의 성윤리의식 실태와 내담자 법적 보호 현실 토론회

일시: 2016. 9. 7(수) 10시-13시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주최: 국회의원 정춘숙의원실, 한국여성심리학회 산하 여성주의상담연구회,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 연구소 울림

**\* 진행순서**

시간	내용
10:00~10:20	<b>개회인사</b> 국회의원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10:20~11:10	<b>사회</b> _ 김민예숙 (한국여성심리학회 산하 여성주의상담연구회 이사)  <b>발제 1</b> _ 상담실 전이-역전이 관계 속의 성문제와 윤리 이승욱 (닛부타의 숲 정신분석 클리닉)  <b>발제 2</b> _ 한국 내담자 법적 보호 현황 임주환 (변호사, 희망제작소 객원연구위원)
11:10~11:20	<b>휴식</b>
11:20~12:05	<b>토론 1</b> _ 이상민 (고려대학교 교육학과 상담전공 교수)  <b>토론 2</b> _ 김보화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 연구소 올림 책임연구원)  <b>토론 3</b> _ 인훈 (서울중앙지방법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 검사)
12:05~13:00	<b>종합토론 및 폐회</b>

**\* 목차**

<b>축사</b>	<b>3</b>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b>토론회를 여는 취지</b>	<b>5</b>
김민예숙 (한국여성심리학회 산하 여성주의상담연구회 이사/ 춘해보건대 교수)	
<b>발제 1_ 상담실 전이-역전이 관계 속의 성문제와 윤리</b>	<b>7</b>
이승욱 (닛부타의 숲 정신분석 클리닉)	
<b>발제 2_ 한국 내담자 법적 보호 현황</b>	<b>17</b>
임주환 (변호사, 희망제작소 객원연구위원)	
<b>토론 1_</b>	<b>31</b>
이상민 (고려대학교 교육학과 상담전공 교수)	
<b>토론 2_</b>	<b>37</b>
김보화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 연구소 올림 책임연구원)	
<b>토론 3_</b>	<b>45</b>
인훈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 검사)	

## \* 축사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정춘숙입니다. 오늘 ‘한국 상담가의 성윤리의식 실태와 내담자 법적 보호 현실’ 토론회에서 인사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 23년간 한국여성의전화에서 여성주의 상담을 이끌어 왔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상담을 하다보면 상담자와 내담자간의 심리적 불균형이 발생하곤 합니다. 제가 만나왔던 폭력피해 경험 여성들 역시 심리 정서적으로 위축된 상태에서 상담을 받을 경우, 상담자에게 의존적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발생하곤 했습니다.

올해 3월, 한 유명 심리상담사가 내담자들과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하고 그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유포한 충격적인 사건이 세상에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상담사는 성범죄자임에도 불구하고 마땅한 처벌 없이 현재 유명세를 떨치며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사회는 상담사가 심리적 약자인 내담자와 부적절한 성적 관계를 갖는 ‘상담실 성폭력’ 문제가 수면위로 떠오르지 않았었습니다. 그렇기에 상담실

성폭력 범죄를 적극적으로 처벌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결국, 상담실 성폭력 피해자를 적절하게 보호할 제도적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피해자는 숨을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또한, 상담 기관가 상담사는 급증하고 있지만 전문가 자격관리가 철저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어떠한 제도적 장치도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심리 상담이 반드시 필요한 폭력피해여성의 경우 남성상담가를 만났을 경우 성윤리 보호부분이 취약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토론회에서‘상담실 성범죄’문제의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또한 현행 심리상담가의 윤리 위반에 따른 제재조치 마련의 필요성을 공유하고, 법과 제도의 보완 방안을 강구해 보는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사회를 맡아주신 한국여성심리학회 산하 여성주의상담연구회 김민예숙 이사님, 상담실 속의 성문제 윤리를 다뤄주실 이승욱 정신분석가님, 한국내담자의 법적 보호현황을 다뤄주실 임주환 변호사님, 그리고 진지한 토론을 이끌어 가주실 고려대학교 교육학과 이상민 교수님, 한국성폭력상담소부설 연구소 울림 김보화 연구원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인훈 검사님께 고마움을 전합니다.

끝으로 이번 토론회가 뜻 깊은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토론회를 여는 취지

김민예숙 (한국여성심리학회 산하 여성주의상담연구회 이사/춘해보건대 교수)

지난 십 수 년 간 우리는 간간히 상담자에 의한 내담자의 성적 피해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왔다. 예를 들어 2003년 한국상담심리학회 윤리위원회는 한 상담가의 학회 회원 자격과 상담심리전문가 자격을 박탈하기로 결의했는데, 학회는 징계 사유에서 상담자가 내담자 인권 존중, 사적관계 금지뿐 아니라 내담자와 성관계를 가져서는 안 되는 조항을 어겼음을 명시했다. 그러나 이러한 사건들은 학회 차원을 넘어서서 공론화되지 않았다. 그 후 십 여 년이 지난 올해는 두 가지 커다란 사건이 발생하여 언론에 기사화되고 법적인 조치가 진행되면서 사회적 담론이 형성되고 있다.

사건 하나는 2016년 3월 서울 강남의 한 정신분석 클리닉 대표가 체포되어 조사받은 일이다. 라깡주의 분석가인 그는 2015년부터 자신에게 정신분석을 받던 여성내담자들에게 상담실 밖에서 만날 것을 제안하고 성관계를 요구하며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은 두 명의 피해내담자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준강간, 감금 등의 혐의로 고소하여 알려졌는데, 사건이 보도되고 검찰로 송치된 지 수개월이 지난 8월 5일 가해자는 불구속 기소되었다. 상담자와 내담자라는 특수한 권력관계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을 처벌하는 현행법이 없는 가운데 어떻게 처리될지 결과가 주목된다.

또 하나의 사건은 2016년 6월 서울의 한 심리상담센터 대표가 구속된 일이다. 그는 2012년 1월 서울북부지법에서 강간미수죄 징역 2년을 선고(확정)받은 48세의 전직 목사로 심리상담센터를 운영하며 2015년에 총 11명의 여성들에게 성추행하였다. 세 명의 피해경험자가 고소하여 수사가 착수되었는데, 가해자가 구속되

면서 사회적으로 알려지게 된 것이다. 누범기간임에도 반성의 여지없이 재범하였기에 검찰은 구속 기소 및 전자발찌를 청구한 상태이다. 이 사건은 전과자가 상담가로 활동할 수 있는 사회임을 드러낸 것이다.

또한 한 피해경험자가 지난해 한 명상카페 운영자의 행적을 온라인상에서 고발한 일도 있었다. 한 명상지도자가 프로그램 운영 과정에서 여성 회원들을 성추행했다고 폭로했고, 그 일을 계기로 그동안 그의 책을 출판해온 출판사는 앞으로 더 이상 그의 책을 내지 않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히기도 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상담가의 수가 증가하고 있는데, 국가 공인 심리상담사 자격증 제도도 없을 뿐만 아니라 상담가로서 활동하는 조건에 대한 사회적 기준이 미비한 점, 상담가가 되기 위해 받는 교육에 윤리의식을 다루는 윤리교육이 미흡한 점 등이 이러한 비윤리적인 일이 발생하는 원인일 것이다. 그동안 피해경험자의 침묵과 사회적 외면 속에서 상담자의 성폭력은 ‘있어서는 안 되는 비윤리적인 일’이라는 정확한 이름으로 불리지 못하였고, 가시적인 영역으로 떠오르지 못하였다. 그렇기에 더 이상 침묵하지 않는 용기 있는 여성내담자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반갑고 고마운 것이다.

사람으로 살아가는 데 중요한 심리적 건강을 위해 일하는 상담가가 내담자에게 성폭력을 한다는 참담한 일이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문제의식을 가진 분들의 의견이 모아져서 “한국 상담가의 성윤리의식 실태와 내담자 법적 보호 현실”이라는 주제로 간담회를 가지게 되었다. 상담과 관련하여 상담자 윤리교육, 국가자격증제도, 내담자와 상담가의 보호 등 다루어져야 할 사회적, 법적 이슈들은 많이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삶에서 상처를 입었기에 안전한 환경을 찾아온 내담자를 사회적으로 보호하는 일이 우선시되어야 할 것이다. 더 이상 ‘상처 주는 치유자’가 나와서는 안 될 것이다. 이번 기회에 내담자 보호라는 이슈를 시작으로 여러 가지 논의가 이루어져 ‘내담자와 상담자 보호’는 물론 우리나라의 상담이 더 발전할 수 있는 길이 모색되기를 바란다.

# 발제 1\_

## 상담실 전이-역전이 관계 속의 성문제와 윤리

이승욱 (닛부타의 숲 정신분석 클리닉)



## 발제1\_

### 상담실 전이-역전이 관계 속의 성문제와 윤리

이승욱 (닛부타의숲 정신분석클리닉)

#### 내담자가 정신분석을 시작할 때의 심리적 상황

극히 일부의 심각한 심리적 병증을 오랫동안 지속해온 내담자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내담자들은 일반의 오해와 달리 모두 상식에 부합하는 일상적인 삶을 충분히 잘 지속할 수 있는 심리 정서 상태를 유지해온 사람들입니다. 또한 다양한 장면에서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일정한 성취를 이룬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인생의 여러 시기에 예기치 않는 외부적 충격에 의해 심리적 내상을 입기도 합니다. 또는 오랫동안 참고 억눌러왔던 감정적인 문제들이 어떤 자극을 만나 내적 통제력을 상실하게 하거나, 또는 그렇게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고 느낄 때 심각한 불안과 함께 심리적 위기감을 느낍니다. 특히 어린 시절과 같이 자기 보호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시기에 가족 간의 갈등, 다양한 피폭력, 신체 심리적 방치, 유기, 위협 등과 같은 부정적인 사건을 경험했을수록 성인기의 유사 피해 경험은 심리적 혼란과 정서적 고통을 폭발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심리적 안정을 회복하기 위해 다양한 방식을 통해 심리적 안정을 회복하려 노력하며, 그 일환으로 정신분석가 또는 상담가를 찾습니다. 이와 같이 상담실, 또는 정신분석가를 찾을 때 내담자들 대부분은 일시적이거나, 그 심각도의 차이는 있지만, 심리적 미약 상태에 처해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건 내담자들은 정신분석 또는 상담을 통해 깨어진 삶의 균형을 회복하고자 하는 필요가 절박한 상황입니다. 심리적으로는 일시적 또는 장기적으로 극도로 의존성이 상승된 상황이며, 통제되지 않는 긴장이나 두려움 때문에 전문가의 전문적인 도움을 절박하게 필요로 하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신

분석 수련생들이 정신분석가가 되기 위해 수련의 한 과정으로서 장기분석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 경우 역시 분석가에 대한 심리 정서적 의존은 분석이 진행될수록 강화되어갑니다.)

## 분석가에 대한 내담자의 전이(轉移 Transference) 심리

먼저 전이에 대한 심리학자들의 정의를 종합하면 다음과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어린 시절 중요한 사람과의 관계에서 비롯된 억압된 감정이나 해결되지 않은 소망을 성인이 되어 다른 타인에게 재현하려는 무의식적 행위.”

정신분석은, 모든 인간은 성장과정에서 심리 정서적 억압을 피할 수 없고, 따라서 이 억압을 해소하기 위해 심리적 결핍과 과잉, 왜곡을 원대상이 아닌 다른 타인에게 투사한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내담자는 분석가에게 자신의 억압과 소망을 투사함으로써, 정신분석과 상담 관계에서 전이는 ‘항상’ 발생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러한 전이는 분석 현장에서 전적으로 분석가에게 투사되는데, 성적인 감정을 포함하여 종종 분노, 증오, 불신, 극도의 의존성을 드러내거나, 분석가를 신과 같은 존재나 영적 스승으로 인식하는 것과 같은 모습으로 드러냅니다.

분석가에 대한 내담자의 심리적 의존이 얼마나 지독한지에 대한 한 가지 실제 상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몇 달 전 여러 명의 내담자와 성관계를 가짐으로 문제가 되었던 한 분석가의 다른 여성 내담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여성 내담자는 분석가와 성관계를 갖지 않았지만 강한 전이 관계에 있었습니다.) 자신의 분석가가 비윤리적 행위로 인해 분석실을 닫고 모든 분석을 중단하게 되자, 여성 내담자는 “분석가가 감옥에 가게 되면 감옥에 찾아가서라도 계속 분석을 받고 싶다”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정리하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상담과 정신분석의 차이가 무엇이라는 것입니다. 다양한 논의와 이견들이 있지만 정신분석의 창시자인 프로이트가 말한 간단한 문장 하나로 정리하겠습니다. “전이-역전이 관계를 다룬다면 모두 정신분석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상담 또는 상담자라는 명칭 대신 정신분석

또는 정신분석가라고 호칭하겠습니다.

문제는 전이의 발생이 아니라 전이를 다루는 방식입니다. 왜냐하면 전이는 정신분석에 있어서 가장 위험하지만 또한 무엇보다도 유용하며 소중한 치료의 소재이기 때문입니다.

‘위험한’ 전이를 분석가는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국내에서 정신분석가로 일하면서 가장 활발하게 정신분석 저술과 번역, 강의 활동을 했던 맹정현 선생님의 저작과 연구를 빌어 설명하겠습니다.

맹정현 선생님은 환자의 과거 성적 경험이 현재의 분석 상황 속에서 재현되는 것은 분석의 일상이며, 그 상황을 정신분석가의 분석을 향한 순수한 욕망을 통해 분석의 가장 중요한 ‘틈새’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신분석의 윤리는 ...(중략) 욕망을 떠받치는 환상을 통과해 충동으로 거슬러 올라가 ... 그곳에서 (내담자가) 주체로써 태어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맹정현, 『리비돌로지』 243p.)

맹정현 선생님의 주장에 굳이 주석을 달자면, 내담자가 아무리 다양한 방법으로 분석가와의 분석 관계를 현실적인 관계로 전환하려 한다 해도, 분석가는 그 요구의 원인인 ‘충동’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정신적 탐색 과정(거슬러 올라감)에서 내담자는 스스로 다층적이고 다면적인 정신의 구조를 발견하게 되고, 내담자 자신의 환상과 믿음이 어떻게 직조되었는지를 이해해나갑니다. 그 작업은 내담자가 왜 분석가와 **현실적인 관계**를 요구하는지, 그 원인으로서는 충동까지 밝혀내게 됩니다.

이 과정은, 분석가는 내담자의 욕망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기꺼이 받아들여, 분석이라는 시공간에서 가장 안전하게 내담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 **분석관계에서 성적 전이의 현실과 윤리의 문제**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정신분석에서 끊임없이 주제로 떠오르는 지점은 분석가를 성적 현실로 끌어들이려는 내담자의 성적 전이, 분석가를 자기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으로 떠받드는 내담자의 극도의 의존성입니다.

정신분석에 대한 세간의 오해와 곡해를 낳는 지점이기도 하지만, 정신분석에서의 성은 성행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애정)과 관련된 모든 감정적, 심리적 요구와 결핍, 그리고 좌절의 역사에 관한 것입니다. 따라서 엄중하게 훈련되지 못하고, 자신의 결핍을 충분히 자각하지 못하는 분석가에 의해 이는 성적 관계로 변질되기도 합니다.

이 상황은 정신분석의 창시자인 프로이트가 정신분석을 종종 외과적 수술로 비견하여 설명했듯이, 의료적 행위에 빚대어 다음과 같이 예시할 수 있습니다. 임신 가능성과 그에 따른 성적 능력을 의학적으로 검사받고자 하는 여성환자는 산부인과를 찾습니다. 의사는 자신의 의학 지식과 임상 경험, 각종 의료 도구를 통해 그 가능성과 능력을 검사·평가합니다. 하지만 환자의 임신 가능성과 성적 능력의 확인을 위해 의사가 자신의 성기와 신체를 직접 사용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내담자가 현실에서 누군가를 사랑하고 성관계를 맺을 수 있는 심리적 능력,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이를 유지할 수 있는 심리적 구조를 교정하기 위해 분석가가 자신의 성기와 신체를 직접 사용해 내담자와 실제 섹스나 연애를 할 필요 역시 전혀 없습니다. (외람된 비유이지만) 어느 남성 산부인과 의사가 난임 여성환자와 직접 성관계를 맺어 아이를 갖게 하겠다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분석가가 내담자와 성관계를 맺는 것 역시 이와 똑같은 일입니다. 내담자와 성관계를 맺은 분석가들의 변명은 모두 “그(녀)를 도와주기 위해서였다”입니다.

성적 전이 외에도, 정신분석 현장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전이가 발생합니다. 본 발제자가 경험한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현직 목사였던 한 내담자는 분석을 받는 과정에서 자신이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마음의 문제를 해결했고 그로 인해 부부관계를 포함한 중요한 타인들과의 관계를 획기적으로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 후 그 내담자는 분석가를 ‘하나님’으로 칭하기도 하면서, 분석가가 원하는 만큼의 돈을 무상으로 기부할 테니 ‘성전’과 같은 정신분석클리닉을 설립할 것을 간곡히 제안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내담자의 '실제적'인 간곡한 소망을 분석의 주제로 격상시켜 한동안 작업한 결과, 독실한 기독교인인 할아버지의 소망을 저버리고 끝내 목회 활동을 하지 않았던 아버지에게 대한 분노, 손자인 자신(내담자)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끝까지 물심양면으로 지원했으나 끝내 당신이 원했던, 손자의 성전 건립을 보지 못한 채 작고하신 할아버지에 대한 부채감과 감사함이 내담자의 마음 깊은 곳에 내재되어 있음을 스스로 자각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분석가에게 유혹적으로 작용되는 내담자의 전이는 사실은 내담자의 오랜, 중요한 정신의 주제물입니다.

이렇게 중요하지만, 분석가에게는 위험한 전이-역전이 관계에서 분석가가 분석관계를 지킬 수 있는 윤리는 두 가지로 압축됩니다.

“분석관계에서 발생한 그 어떤 상황도 모두 분석의 주제여야 한다”는 정신분석의 정언명령이 그 첫째입니다. 분석에서 중요한 것은 정신의 실제이기 때문입니다.

“분석가는 내담자로부터 분석료 외의 그 어떤 이득도 취해서는 안 된다”는 분석의 확고한 원칙이 두 번째입니다.

분석가가 이 두 가지 원칙을 지켜내야 내담자는 물론 분석가 자신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 필수적으로 유지해야 할 전문가의 덕목이 있습니다. 내담자의 전이가 분석가를 실제로 움직여 성적 관계나 금전 관계를 맺게 되는 데에는, 전적으로 분석가의 미숙함이 원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강조하건대, 내담자가 전이감정을 일으키는 것이 분석관계를 망치는 잘못된 원인으로 지목되는 것이야말로 전적으로 잘못입니다. (정신분석을 공부한 사람들에게서도 이런 잘못된 믿음이 종종 발견됩니다.) 내담자가 전이감정을 가지는 것은 오히려 내담자의 권리이며, 내담자는 전이를 일으키기 위해 분석에 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전이는 의도적으로 생성하는 것이 아니라, 식당에 온 사람의 허기와 마찬가지로 이미 준비되어 있는 필요입니다.

중요한 것은 분석가가 이 전이를 다루기에 적절한 태도를 지녔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분석가의 윤리 문제를 연구한 모든 연구자들, 오랜 분석 경험을 가진 현장 분석가들의 공통된 의견은, 분석가의 취약한 지점을 건드리는 전이감정일수록

분석가가 내담자와 실제 관계로 빠질 위험이 더 높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머니가 무식하고 교양 없어 자신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다고 믿는 분석가는 지적이고 세련된 여성 내담자와 사랑에 빠질 위험이 더 높습니다. 물론 그 반대의 경우도 발생 가능한 전이-역전이입니다.

따라서 분석가는 자신의 교육 분석 경험과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자신의 심리적 취약 지점을 점검하고 전이-역전이 관계를 깊게 점검함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내담자가 주체로서의 삶을 꾸려나가는 데 결정적으로 조연의 도움이 되어야 합니다. 분석가는 내담자의 투명한 스크린이 되기 위해 끊임없이 자신을 청결하게 유지하는 것이 제일의 윤리 덕목입니다.

결론을 위해 본 발제자의 경험을 하나 공유하고자 합니다. 20여 년 전, 초보 분석가 시절이었을 때, 강력한 로맨틱 전이-역전으로 인해 혼란스럽고 위험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심리적으로 일시적 미약상태였지만 굉장히 매력적이고 젊은 데다, 상당한 부자이기까지 했던 이 여성 내담자의 강력한 전이는, 오랜 학업과 수련에 지친 가난한 초보 분석가의 정신을 흔들어 놓기에 충분한 환경이었습니다. 분석가와 현실 관계를 맺자고 종용하는 내담자의 유혹은 분석가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때, 분석가의 가장 깊은 고민은 이 여성과 실제 관계를 맺을 것인가 말 것인가, 밖에서 만날 것인가 말 것인가, 섹스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가 아니었습니다. 또는 이 혼란을 아내에게 말할 것인가 말 것인가도 아니었습니다. 처음 겪는 이 혼란의 순간에 제가 가장 고민했던 것은 '이 고통을 슈퍼바이저에게 말할 것인가 말 것인가'였습니다. 몇 주간의 고민 끝에 결국 저는 슈퍼바이저들에게 이야기했고, 분석가에게도 모든 혼란을 털어 놓았습니다.

제가 심리적 요동을 고백하자 슈퍼바이저들은 주 5회의 슈퍼비전을 제공하고, 분석도 주 5회로 늘이라고 권고했습니다. 그리고 정성을 다해 저의 역전이에 대해 같이 고민하고 점검했습니다. 분석가도 물론 역전이와 연관된 제 삶의 유사성에 대해 더 관심을 기울이며 이 과정을 함께 했습니다. 이 전체 과정을 통해 한 명의 분석가 새롭게 탄생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십 수 년 간의 분석가라는 직업을 유지하면서 가장 훌륭했다고 자평하

는 결정이 이 혼란을 그 누구도 아닌 수퍼바이저와 상의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나는 왜 이것을 수퍼바이저와 상의할 것을 가장 고민했을까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 4년간의 대학원 수업과 수련에서 받았던 대부분의 훈련이 분석 현장에서 발생한 모든 일은 수퍼바이저로부터 점검을 받아야 한다는 세뇌에 가까운 훈련이 있었습니다.

분석가가 법적으로 처벌 받는 것이 두려워 내담자와 성적관계를 맺지 않아야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분석가의 공지에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분석가에게는 법을 극복하는 윤리가 생존해 있어야 하며, 그것은 그 어떤 현실도 통제할 수 없는 엄중한 자신만의 단련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아이 하나를 키우기 위해 마을 하나가 필요하다는 진부한 말만큼이나, 분석가 한 명을 탄생시키기 위해서는 올바른 전문가 공동체가 있어야 함 역시 물론입니다. 하지만 지금 한국의 상담자, 분석가 양성 시스템과 내용을 볼 때 이런 공동체를 가지는 것은 요원해 보입니다. 지침을 윤리로 혼동하는 전문가 집단과 윤리에 대해 제대로 고민한 적 없는 우리들(모든 상담 수퍼바이저, 교수, 전문가들) 자신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내담자를 보호하기 위해 분석가를 법으로 겁박해야만 하는 이 상황은 분석가로서는 거부하고 싶습니다.

## **부록: 분석가와 성적 관계를 맺은 내담자의 정신적 충격과 실제 위험성**

현재 한국의 정신분석(심리치료 및 상담 포함)에 대한 문화적 수용, 일반 대중의 이해, 전문가 양성 수준은 정신분석을 먼저 받아들인 미국의 1970년대 상황과 어느 정도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1970년대와 80년대 미국의 정신의학자(정신과 의사), 심리학자(정신분석가, 상담가)들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연구에서 상당수의 심리전문가들이 내담자와 성적 관계를 맺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 연구에서는 최고 17%(Forer, 1970), 또 다른 연구에서는 12%(Pope, Keith-Spiegel, & Tabachnick, 1986)의 전문가들이 내담자와 성적 관계를 맺은 경험이 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심리전문가와 성적 관계를 맺은 내담자들이 겪는 정신적, 실제적인 문제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미국정신의학회(APA)의 윤리위원장을 역임했고, 정신분석과 심리치료의 윤리에 관해 197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탁월한 연구 업적을 남긴 Keneth S. Pope 박사의 논문과 연구를 중심으로 설명하겠습니다.

Pope 박사는 분석가와 성적 관계를 맺은 뒤 내담자들이 겪는 정신적, 실제적 위험성을 오랜 기간 심도 깊은 여러 연구를 통해 분류 정리하였습니다. 간략하게 개괄하겠습니다.

- \* 인지적 기능 장애 : 분석가와와의 성관계는 내담자로 하여금 일상생활에서 요구되는 집중, 주의 기울이기, 기억력 등에 심각한 기능 장애를 초래했다.
- \* 감정적 불안정성 : 종종 현실감을 상실하며, 감정의 기복이 심해지고, 삶이 누군가로부터 침해받고 있다는 기분에 시달린다.
- \* 공허함과 소외감 : 분석가와와의 관계가 진실한 것이 아님을 알게 되고, 버림받은 느낌으로 고통 받는다.
- \* 죄책감 : 비논리적이며 비합리적인 죄책감을 지속적으로 가지게 된다.
- \* 타인을 신뢰하는 능력의 상실 : 가장 신뢰해야 할 타인이 그 경계를 침범했고, 누구도 믿을 수 없다는 불신이 깊게 자리 잡는다.
- \* 성에 대한 혼란 : 분석가와 성관계를 맺은 많은 내담자들은 자신의 성 충동과 성적 욕망에 대해 정당성을 확신하지 못해 괴로워한다.

또 다른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피해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보호우토스(Bouhoutsos)박사의 1983년 연구에서는 분석가와 성관계를 맺은 내담자의 11%는 정신병원에 입원해야 할 정도의 정신적 붕괴 상태를 경험했으며, 1%의 내담자는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고 합니다.



1984년, 빈손(Vinson) 박사는 분석가와 성관계를 맺은 여성 21명을 면담 조사했는데, 그중 20명은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로 고통 받고 있으며, 4명은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 참고 문헌

맹정현 (2009), 『리비도로지』, 서울: 문학과 지성사

Bouhoutsos, J., Holroyd, J., Lerman, H., Forer, B. & Greenberg, M. (1983),  
“Sexual Intimacy between Psychotherapists and Patients”,  
Professional Psychology: Research and Practice, 14, 185–196.

Forer, B. (1970). The therapeutic relationship: 1968,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California State Psychological  
Association, Pasadena.

Freud, S. (1960), The ego and the id. J. Strachey (Ed.). (J. Riviere,  
Trans.), New York: W.W. Norton. (Original work published  
1923)

Pope, K., S. Therapist–Patient Sex as Sex Abuse: Six Scientific,  
Professional, and Practical Dilemmas in Addressing Victimization  
and Rehabilitation. <http://kspope.com/sexiss/therapy1.php>

Webster's New World Dictionary of the American Language (2nd College Ed.  
1970).

Pope, K. S., Keith–Spiegel, P., & Tabachnick, B. (1986), Sexual attraction  
to clients: The human therapist and the (sometimes) inhuman  
training system. American Psychologist, 41, 147–158.

Vinson, J. S. (1984), Sexual contact with psychotherapists: A study of client  
reactions and complaint procedure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California School of Professional Psychology,  
Berkeley.

**발제 2\_**  
**한국 내담자**  
**법적 보호 현황**

임주환 (변호사, 희망제작소 객원연구위원)

## 발제2\_

# 한국 내담자 법적 보호 현황<sup>1)</sup>

임주환 (변호사, 희망제작소 객원연구위원)

## 1. 들어가며

“나는 어느 집을 방문하든 환자를 이롭게 할 목적으로 방문할 것이고, 고의적인 올바르지 못한 행위와 모든 유혹들, 특히 여성 또는 남성과의 성적 관계를 피할 것이다.” 치료자와 환자 간 성적 접촉을 금지하는 윤리의 기원은 기원전 4세기 히포크라테스 선서로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20세기 초 지그문트 프로이트는 당시 새롭게 떠오르고 있던 심리치료(Psychotherapy)와 관련해 확고한 윤리적 기초를 세웠는데, 치료자-내담자 관계(a therapeutic relationship)를 양자 간의 에로틱한 관계로 바꾸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한국심리학회(의 정관(윤리규정)은 제60조에서 “심리학자는 치료적 관계에서 내담자/환자와 어떤 성적 관계도 허용되지 않는다. 심리학자는 치료 종결 후 적어도 3년 동안 자신이 치료했던 내담자/환자와 성적 친밀성을 가지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가능하면 치료 종결 3년 후에라도 자신이 치료했던 내담자/환자와 성적 친밀성을 가지지 않는다.”고 규정하는 등, 우리나라에서도 직업적 윤리의 측면에서는 심리치료사(Psychotherapist)<sup>2)</sup>가 내담자와 성적인 관계를 가지는 것을 엄

1) 이승욱 박사의 발제문 <상담실 전이-역전이 관계 속의 성문제와 윤리>에서 심리상담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이의 효과를 자세히 다루고 있으므로, 이 글에서는 이와 관련한 서술을 생략한다.

2) Psychotherapist는 심리치료사 또는 정신치료사로 번역되는데, 이 글에서는 논의의 편의를 위해 명칭을 심리치료사로 통일한다. 미국의 경우, Psychotherapist(심리치료사)의 범주에는 Psychiatrist(정신과 의사), Psychologist(심리학자), Licensed Clinical Social Worker(LCSW, 임상사회복지사), Licensed Marriage and Family Therapist(LMFT, 결혼가족상담치료사) 등이 모두 포함된다. 우리나라는 현재 사실 심리상담소를 별다른 자격조건 없이 누구나 개설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지만, 미국의 경우 LCSW, LMFT 등 자격증(Professional licenses)을 가진 실무

격히 금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사설 심리상담소에서 심리치료사의 성폭력 범죄가 발생하는 사례가 자주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지고 있다.

심리상담의 과정에서 내담자는 심리치료사에게 심리적, 정서적으로 극심하게 의존하게 되는바, 심리학계에서는 이러한 과정에서 내담자가 과거 중요한 인물에게 품었던 감정을 심리치료사에게 그대로 투사하는 ‘전이’(Transference)가 발생한다고 본다. 이러한 전이에 의하여 내담자는 심리치료사를 성적인 대상, 신과 같은 존재나 영적인 스승 등으로 인식하게 되기도 한다.<sup>3)4)</sup>

심리치료사라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이렇게 전적인 심리적 의존상태에 놓인 내담자와 성적 관계를 가지는 경우, 이를 우리 사법시스템 안에서 효과적으로 처벌하고 피해자의 손해를 회복시킬 방법이 있는 것일까. 이 글에서는 상담실 성폭력의 처벌가능성과 관련하여, 성폭력범죄 관련 법조문 및 판례의 태도를 간략히 살펴보고, 상담실 성폭력을 처벌하는 형법 조항을 마련하고 있는 미국 내 일부 주들의 사례를 소개할 것이다.

## 2. 성폭력 관련 법조문 및 판례의 태도

### 가. 현행 법률의 규정 현황

성폭력범죄에 관한 구성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특별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을 꼽을 수 있는데, 위 법률에서 규정된 기본적인 구성요건의 개요는 아래의 표와 같다.

---

자(practitioner)들만이 개설할 수 있다.

- 3) Linda Jorgenson, Rebecca Randles, and Larry Strasburger, The Furor over Psychotherapist-Patient Sexual Contact: New Solutions To An Old Problem, Wm.&Mary L.Rev. 645(1991) 중 제652쪽 및 제653쪽 참조
- 4) 가정폭력, 성폭력 등에 의하여 매우 정신적, 감정적으로 매우 취약해진 상태에 있는 내담자는 자신의 고통, 우울증 등의 치료 내지 완화를 기대하면서 자신의 공포, 분노, 환상, 감정 등을 심리치료사에게 들려주게 된다. 이 과정에서 내담자가 심리치료사에게 전적인 신뢰를 갖게 되고 심리적으로 의존하게 된다는 점은, ‘전이’가 심리치료 과정에서 보편적으로 발현된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경험칙 상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표> 성폭력범죄의 객체 및 행위태양

법률	조문 및 죄명	객체	행위태양
형법	제297조(강간죄)	사람	폭행, 협박 + 간음
	제297조의2(유사강간죄)	사람	폭행, 협박 + 신체(성기제외)내부의 성기삽입, 성기, 항문에 신체(성기제외) 또는 도구 삽입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죄)	심신상실, 항거불능 상태의 사람	심신상실, 항거불능 이용 + 간음(추행)
	제302조(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	위계, 위력 + 간음
	제303조(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피보호감독자	위계, 위력 + 간음
		법률상 구금자	간음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13세 미만자	간음
제298조(강제추행)	사람	폭행, 협박 + 추행	
성폭력특별법	제4조(특수강간등)	사람	흥기휴대, 합동 + 강간(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친족관계인 사람	강간(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
	제6조(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신체, 정신장애자	강간(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
			위계, 위력 + 간음(추행)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13세 미만자	강간(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 위계, 위력 + 간음(추행)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피보호감독자	위계, 위력 + 추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아동·청소년(19세 미만자)	강간(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 위계, 위력 + 간음(추행)
	제8조(장애인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	장애아동·청소년	간음, 추행

\* 김슬기(2013)에서 인용

심리상담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폭력 범죄로는 강간, 준강간, 강제추행,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등을 꼽을 수 있다. 이하에서는 성폭력범죄에 수반되는 행위태양인 폭행·협박, 항거불능, 위계·위력 등에 대한 판례의 태도를 살펴보고, 이를 통하여 특수한 심리적 상황에 놓인 내담자(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현재 우리 사법시스템 안에서 충실히 보호될 수 있는가를 엿보기로 한다.<sup>5)</sup>

#### 나. 강간죄, 강제추행죄 등에서의 폭행·협박에 대한 판례의 태도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하는 경우 성립하는데, 판례는 강간죄에서의 ‘폭행 또는 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해석한다(최협의를설). 그리고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폭행·협박 자체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또한 판례는 간음 행위 당시의 폭행·협박의 행위태양 외에도 피해자의 구조요청 유무, 성교 전후의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등을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다. 다만, 판례는 최근에는 폭행·협박에 대한 기본적인 태도를 유지하면서도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선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고 판시하여 이전에 비해 성범죄 성립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5979 판결 참조).<sup>6)</sup>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게 대하여 추행한 행위인데, 판례는 강제추행죄에서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 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고,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

5) 피해자인 내담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인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논의의 편의를 위해 내담자가 성년이고 비장애인인 경우로 한정하여 서술하기로 한다.

6) 김슬기(2013) 제6쪽 및 제7쪽 참조

는 이상 그 힘의 대소 강약을 불문한다고 판시하여, 강간죄의 ‘폭행·협박’보다 완화하여 해석하고 있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참조).

참고로 2016. 7. 1.경 언론에서는 심리치료센터에 상담하러 오는 여성 환자들(10대 청소년 포함)을 치료를 핑계로 강제로 포옹하거나 입을 맞추는 등 신체접촉을 한 원장 강모씨가 아동법 위반(강제추행) 및 형법상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되었다는 뉴스를 보도한 바 있는데, 검찰은 강제추행죄와 관련하여서는 폭행 또는 협박의 정도가 ‘항거가 곤란한 정도’에 불과하다라도 범죄의 성립을 인정하는 판례의 태도를 감안한 것으로 생각된다.<sup>7)</sup>

#### **다. 준강간죄, 준강제추행죄에서의 항거불능에 대한 판례의 태도**

형법상 준강간이나 준강제추행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하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한다. 여기서의 ‘심신상실’이란 정신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를 가리키는데, 완전무의식 상태(수면, 인사불성)뿐만 아니라 정신기능의 이상으로 인하여 통상인의 동의로 볼 수 없는 경우도 포함된다. 한편 ‘항거불능 상태’는 심신상실 이외의 사유로 인하여 심리적·물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말한다.

판례와 수사실무의 태도를 보면, 술에 취하여 완전히 의식을 잃은 여성을 강간 내지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피해자가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아 준강간죄의 성립을 쉽게 긍정하지만, 심신상실 이외의 사유, 즉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는 이유로 준강간죄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는 매우 희귀한 것으로 보인다.

심리치료 과정에서 ‘전이’에 의하여 심리치료사에게 전적으로 의존하고 더 나아가 심리치료사를 숭배하기에까지 이른 내담자를 심리치료사가 간음한 경우, 이를 심리적인 항거불능 상태에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보아 준강간죄로 처벌할 수는 없는 것일까. 이 질문과 관련하여 시사점을 주는 판례가 있다. 대법원은 교회 노회장이 교회 여신도들을 간음, 추행한 사례에서, 교회 여신도들이 종교적 믿

7) 관련뉴스 동영상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214&aid=0000638079&sid1=001>

음에 대한 충격 등 정신적 혼란으로 인한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한 바 있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도2001 판결 참조).

위 사건의 제1심 판결문을 보면, 피고인이 자매인 피해자들로 하여금 가족에게 알리지 않고 피고인이 머무르고 있었던 홍콩의 한 아파트로 오도록 지시한 뒤 간음한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들은 자신들이 메시아로 믿은 피고인의 부름을 받고 자신들의 부모에게조차 행선지를 밝히지 않은 채 이국인 홍콩에 갔고, 피고인이 성관계를 하는 순간에조차 피해자 A는 “저를 시험하지 마세요.”라고 말하고, 피해자 B는 “아파요.” 정도의 말 밖에 하지 못하였으며, 피해자들이 둘이 같이 있었음에도 피고인에게 반항할 생각조차 하지 못한 점 외에, 당시 피고인이 거주하던 아파트에는 피고인을 신봉하는 소수의 신도들밖에 없었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은 위 피해 당시 자신들이 메시아로 여기며 그 권위를 절대적으로 신봉해오던 피고인과의 관계나 피해가 일어난 장소와 주변상황 등으로 인하여 적어도 심리적으로 반항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이 이러한 상태에서 피해자들을 간음한 이상 준강간죄가 성립한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8. 12. 선고 2008고합225 판결).

참고로 한겨레신문 2016. 3. 15.자 1면 “심리상담실이 위험하다.” 기사의 사례를 보면, 가해자인 심리상담사는 어린 시절 아동학대 피해자로서 어른이 돼서도 불안과 우울증세로 자주 직장을 옮기던 피해자에 대하여 1년 반 동안의 분석을 통해 피해자의 정신적 취약점을 파악한 뒤, 성적 요구를 거절하면 치료를 중단하고 피해자를 버리겠다는 암시를 반복하는 등의 수법으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간음하였다. 사안에서 피해자는 자신을 간음하는 가해자에 대하여 명시적인 반항을 하지 못하였는데, 심리상담사를 전적으로 신뢰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이에 의하여 심리상담사에게 자신의 애착 대상이었던 아버지를 투사하였던 내담자(피해자)는 준강간죄의 구성요건 중 하나인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생각된다.<sup>8)</sup>

---

8) 그러나 2009도2001 판결의 피고인은 거듭된 언론보도 등을 통해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끌었던 JMS 교주 정명석이었다는 점, 국내에서는 미국과 달리 ‘전이’에 의한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에 대한 법적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는지 여부를 중요하게 여기는 수사기관의 태도로 볼 때 거센 저항 등이 수반되지 않는 심리치료사의 내담자 간



## 라. 위계·위력에 대한 판례의 태도

성폭력범죄에서 위계는 기망을 통하여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성적 판단을 어렵게 하는 행위를 의미하고, 위력은 상대방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유형적인 것 뿐만 아니라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을 말한다. 위계·위력을 이용한 성폭력범죄로는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한 간음·추행죄(형법 제302조),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하는 경우 성립하는 피보호·감독자 간음죄(형법 제303조 제1항) 등이 대표적이다.<sup>9)</sup>

대법원은 병원 응급실에서 당직 근무를 하던 의사가 가벼운 교통사고로 인하여 비교적 경미한 상처를 입고 입원한 여성 환자들의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음부 윗부분을 진료행위를 가장하여 수회 누른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로서 추행을 한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3도7107 판결).

또한 대법원은 피고인이 아들의 여자친구로서 당시 만 17세이던 피해자와 성교를 위하여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간 것 이외에 별다른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은 사안에서, 피고인이 몸으로 짓누르고 있어서 저항할 수가 없었고 겁을 먹은 나머지 그 의사에 반하여 간음을 당하였다고 보아 위력에 의한 간음죄의 성립을 인정하였다(대법원 2005. 7. 29. 선고 2004도5868).

그러나 우리나라는 미국과 달리 사설 상담소를 운영하는 심리치료사와 관련한 자격증 제도가 구비되어 있지 않다는 점, 심리치료의 특성상 가해자가 치료행위의 일환인 것처럼 기망하여 내담자를 간음 또는 추행하는 경우보다는 내담자의 정신세계를 장악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는 점 등을 감안하면, 기존 판례논리에 의할 경우, 심리치료사-내담자 관계에서 발생한 간음이나 추행에 대하여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추

---

음을 정상적인 애정관계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심리상담실 성폭력의 경우에도 수사기관과 법원이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준강간이나 준강제추행죄의 성립을 인정할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9) 안경옥(2015) 제208쪽 참조

행)죄가 부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인다.

## 마. 소결

우리 대법원은 성폭력범죄의 행위태양인 폭행·협박, 항거불능 상태 이용, 위계·위력 등이 존재하였는지에 관하여 매우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는바, 전이현상을 이용한 상담실 성폭력과 관련해 처벌의 공백이 존재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법원과 수사기관이 심리상담실 성폭력과 관련한 ‘심리적 항거불능’의 판단 기준을 정립하고, 심리치료사-내담자 간에 업무상 보호관계가 존재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

## 3. 상담실 성폭력에 관한 미국의 법률

### 가. 형사 처벌 관련 조항들

심리치료사(Psychotherapists)와의 성관계로부터 야기된 내담자(환자)의 심리적 피해는 끔찍하고, 이러한 정신적 피해는 수년간 지속된다. 의사들은 내담자(환자)와 심리치료사 간의 성관계를 강간, 아동성학대, 근친상간 등으로 빗대어 설명하기도 한다. 위에서 언급한 성적 학대를 경험한 사람들은 강렬한 수치심, 죄의식, 고립감, 자책감을 가지게 되고, 자살할 위험성도 매우 높다고 알려져 있다.

미국에서는 1980년경부터 심리치료사-내담자 간 성적 접촉에 대한 사례보고가 급증하였고, 의료과실의 한 유형으로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크게 늘었다.<sup>10)</sup> 위스콘신 주는 1983년 심리치료사의 환자에 대한 성적 착취(sexual exploitation)를 처벌하도록 입법화했고, 1990년까지 위스콘신, 미네소타, 노스다코타, 콜로라도, 캘리포니아, 메인, 플로리다 등 7개 주에서 위와 같은 성적 착취를 중범죄(felony)로 처벌하는 법률을 제정하였다.<sup>11)</sup> 2013년 현재, 23개 주

10) Clifton Perry & Joan Wallman Kuruk, Psychotherapists` Sexual Relationships With Their Patients, 2 Annals Health L., 35(1993) 중 제35쪽 참조

11) Linda Jorgenson, Rebecca Randles, and Larry Strasburger(1991) 제673쪽 내지 제683쪽 참

이상에서 심리치료사와 환자 간의 성관계를 처벌하고 있는데, 대부분은 이를 중범죄로 규정한다.<sup>12)</sup>

선구적으로 상담실 성폭력에 관한 형사처벌 규정을 마련한 7개 주 중에서 특히 미네소타 주는 심리치료사 성폭력 처벌을 명문화한 대표적인 사례로서, 심리상담실 성폭력을 범죄 구성요건으로 규정하는 입법을 추진한 다른 많은 주들에게 영향을 미쳤다. 미네소타 주는 1984년 심리치료사의 성적 착취 문제를 연구하는 태스크포스를 구성했고, 그 연구결과를 수용하여 상담실에서의 간음이 3급 중범죄에 해당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미네소타 주는 이후 일부 문구수정을 거쳐 현재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609.344 CRIMINAL SEXUAL CONDUCT IN THE THIRD DEGREE.

§ Subdivision 1. Crime defined. A person who engages in sexual penetration with another person is guilty of criminal sexual conduct in the third degree if any of the following circumstances exists:

(h) the actor is a psychotherapist and the complainant is a patient of the psychotherapist and the sexual penetration occurred:

(i) during the psychotherapy session; or

(ii) outside the psychotherapy session if an ongoing psychotherapist-patient relationship exists.

Consent by the complainant is not a defense;

(i) the actor is a psychotherapist and the complainant is a former patient of the psychotherapist and the former patient is emotionally dependent upon the psychotherapist;

(j) the actor is a psychotherapist and the complainant is a patient or former patient and the sexual penetration occurred by means of therapeutic deception. Consent by the complainant is not a defense;

(k) the actor accomplishes the sexual penetration by means of deception or false representation that the penetration is for a bona fide medical purpose.

Consent by the complainant is not a defense;

조

12) Sherri Morgan, Criminalization of Psychotherapist Sexual Misconduct(2013) 참조

- (h) 심리치료사가 심리치료 도중 또는 치료자-내담자 관계가 지속되는 가운데 심리치료 이외의 상황에서 환자를 간음한 경우. 피해자의 동의는 방어사유가 될 수 없다.
- (i) 행위자가 심리치료사이고 피해자가 이전에 환자였던 자로서 여전히 심리치료사에게 심리적 의존상태에 있는 경우.
- (j) 심리치료사가 치료과정 상의 기망행위<sup>13)</sup>로 환자 또는 환자였던 자를 간음한 경우. 피해자의 동의는 방어사유가 될 수 없다.
- (k) 행위자가 기망을 써서, 또는 간음이 진실로 의료목적 하에 이뤄지는 것으로 피해자가 착오에 빠지게 하여 간음한 경우. 피해자의 동의는 방어사유가 될 수 없다.

#### 나. 상담실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sup>14)</sup>

상담실 성폭력에 대한 민사소송 전개과정은 초기에 원고들은 전통적인 불법행위법 관련 청구원인들 즉 강제추행(Battery), 애정이전(Alienation of affection, 간통과 유사한 개념), 그리고 의료과실(Malpractice) 등에 의존하다가, 1990년을 전후하여서는 심리치료자에게 성폭력(sex abuse)에 대한 책임을 지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Intentional and Negligent Infliction of Emotional Distress)를 내세우기 시작했다.

심리치료에서의 의료과실과 관련한 소송에서, 원고는 심리치료사가 특정한 직업적 의무를 가지고 있고, 심리치료사가 그 의무를 위반하였으며, 원고가 그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이와 같은 종류의 소송이 등장한 초기에는 정신의료분야 전문직업인들이 환자와 성적인 친밀관계를 피해야 한다는 윤리규정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① 심리치료 과정에서 나타나는

13) 치료과정 상의 기망행위(therapeutic deception)의 의미에 관하여 플로리다 주에서는 명시적 조문을 마련하고 있는데, ‘내담자에게 심리치료자에 의한 성적인 접촉이 내담자 치료에 부합하거나, 치료의 일환이라고 믿게 만드는 것’이라고 풀이하고 있다[The 2016 Florida Statutes 491.0112(2)(b) “Therapeutic deception” means a representation to the client that sexual contact by the psychotherapist is consistent with or part of the treatment of the client.]

14) Clifton Perry & Joan Wallman Kuruk, Psychotherapists` Sexual Relationships With Their Patients, 2 Annals Health L., 35(1993) 제38쪽 내지 제51쪽 참조

전이현상의 존재와 이런 현상을 환자의 치료를 위해 이용하여야 하는 심리치료사들의 직업적 의무를 확인하거나(Zipkin v. Freeman), ② 환자는 치료자와의 권력 관계에서 의사결정을 제대로 하기 어렵고, 심리치료사는 스스로 환자의 이익을 극대화할 의무가 있는데 치료자-내담자 간 성적인 관계는 내담자에게 심리적 해악을 끼치며, 치료자의 성적인 만족은 내담자의 안전하고 신뢰가능한 환경에서 치료받으자 하는 욕망과 상충된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심리치료자에게는 수탁자의 의무(Fiduciary Duty)가 인정된다고 판시(Roy v. Hartogs)함으로써 심리치료자의 윤리를 정립하였다.

한편 의료과실 주장에 더하여, 원고들이 고의 또는 과실로 정신적 고통(심리치료사의 성적 착취의 결과로 발생한 고통)을 가하는 행위가 있었음을 주장하여 승소하는 사례가 점차 늘어났다. 예컨대 Corgan v. Muehling 판결에서, 일리노이주 법원은 사이버 심리학자인 피고가 치료를 가장하여 자신과 성관계를 맺었고, 이로 인해 자신이 엄청난 정신적 혼란을 겪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 다. 소결

미국은 지난 40여 년 동안 심리치료사에 의하여 성적으로 착취된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수단을 지속적으로 확장해왔다. 미국의 법원은 전이현상의 존재, 전이현상을 환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할 심리치료사의 의무, 치료자-내담자 간 성관계가 내담자에게 가하는 정신적 해악 등을 인정함으로써, 손해 배상소송을 통한 피해자의 권리구제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미국 내 일부 주들은 설령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라도 심리치료 과정에서 내담자와 성관계를 가진 심리치료사를 형사처벌<sup>15)</sup>하고 있는바, 이는 전이현상에 의하여 피해자가 제대로 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정을 반영한 합리적인 입법으로 생각

---

15) 심리상담사와 내담자 간 성관계에 대한 형사처벌 사례는 꾸준히 보고되고 있는바, 2014. 11. 20.자 미국의 한 뉴스채널에서는 상호 합의 아래 내담자와 성관계를 가진 여성 심리상담사에 대한 유죄판결에 관하여 다루기도 했다.  
<http://fox6now.com/2014/11/20/freudian-slip-therapist-jailed-for-sexual-relationship-with-a-patient/>

된다.

#### 4. 상담실 성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한 과제들

심리치료를 경원시하던 시민들의 인식은 이제 옛말이 되었고, 다양한 심리치료를 제공하는 공적인 기관과 사설 심리상담소가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다. 2016년 우리사회에서 심리치료는 내담자/환자 및 그 가족들의 고통을 경감시킴으로써 사회전체의 복리후생 증진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그러나 심리치료사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내담자를 성적으로 착취함으로써 오히려 내담자의 고통을 증대시키는 비윤리적인 사례들에 대한 보고도 늘어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그렇다면, 심리치료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성폭력을 예방 및 근절하기 위하여서는 어떤 노력들이 필요할까. 미국 사법체계와의 비교법적 검토 결과를 참조하면 몇 가지 중요한 원칙과 실마리들을 찾을 수 있다.

먼저 내담자의 심리적 전이현상을 자신의 성적인 만족을 충족하기 위해 악용하여서는 안 된다는 심리치료사의 윤리를 정립하여야 하는바, 그 전제로서 심리상담실 개설과 관련한 자격제도를 제대로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미국은 각 주에서 사설 심리상담소를 개설할 수 있는 자격요건을 통제하고 있고, 윤리강령을 위반한 심리치료사들의 공인자격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국가 공인 심리상담사 자격증 제도를 정비하여, 무자격자의 심리상담소 개설을 막고, 상담실 성폭력 가해자에 대하여서는 자격박탈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법원과 수사기관은 성폭력 범죄의 행위태양을 규정한 법조문의 해석과 관련하여, 심리상담 과정에서의 강한 의존관계를 감안하여야 한다. 특히 ‘전이’에 의하한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 심리상담 과정에서의 위계, 위력의 존재 등에 대한 적극적 인정을 통하여 상담실 성폭력 피해자의 양산을 막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성폭력 범죄에 대한 형사법 규정 중 일부에 대한 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추행의 경우 심리치료자-내담자 관계에 적용될 것인지에 대하여 논란의 여지가 있는 바, 형법 303조 및 성폭력특별법

제10조에 각각 제3항을 신설하는 방안(예컨대 “심리치료 등의 과정에서 심리적 의존관계에 놓인 사람을 간음/추행한 사람은 징역 0년 또는 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등에 대해 논의가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김슬기(2013), “성폭력범죄의 행위태양에 관한 연구 - 미국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제38호, 대검찰청.
- 윤덕경·김차연(2015), “성폭력 판례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과 개선과제” 『이화젠더법학』 제7권 제1호,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 류병관(2006), “미국 강간죄에 있어 ‘저항’과 ‘동의’에 관한 연구, 『비교형사법연구』 제9권 제2호, 한국비교형사법학회.
- 안경옥(2015),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죄의 판단기준 및 형법상 성범죄규정 개선방안”, 『경희법학』 제50권 제4호, 경희법학연구소.
- Linda Jorgenson, Rebecca Randles, and Larry Strasburger(1991), “The Furor over Psychotherapist-Patient Sexual Contact: New Solutions To An Old Problem”, Wm.&Mary L.Rev. 645.
- Clifton Perry & Joan Wallman Kuruk(1993), Psychotherapists` Sexual Relationships With Their Patients, 2 Annals Health L., 35.
- Sherri Morgan(2013), Criminalization of Psychotherapist Sexual Misconduct

# 토론 1\_

이상민 (고려대학교 교육학과 상담전공 교수)



## 토론 1\_

이상민 (고려대학교 교육학과 상담전공 교수)

발제자가 원고에서 언급했듯이 상담자와 내담자간의 성적 문제는 상담자와 내담자간의 경계(boundary)가 모호하고 둘 간의 관계가 한 쪽으로 의존(dependent), 혹은 서로 기생(co-dependent)하는 순간에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성적 관계는 특히 남성 상담자와 여성 내담자 사이에서 보다 빈번하게 발생하는데, 이는 여성 내담자가 훨씬 쉽게 남성 상담자 대상 성적 전이(transference)를 일으키거나 혹은 남성 상담자에게 훨씬 쉽게 성적 역전이(counter-transference)를 행동화(acting-out)하기 때문일 것이다. 미국상담협회(American Counseling Association)의 경우 윤리강령을 통해 상담자-내담자 성적 관계를 철저히 재제하고 있으며, 상담이 끝난 후에도 5년 동안은 내담자와는 어떠한 성적 관계도 맺을 수 없게 규정하고 있다. 1995년 윤리규정에서는 이 기간이 2년이었으나, 2005년 윤리강령을 개정하면서 이 기간을 5년으로 늘렸다. 이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상담관련 학회라고 할 수 있는 한국상담심리학회(3년, 한국상담학회의 경우 2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에 비해 훨씬 강력하다고 볼 수 있다. 최근 2014년 개정된 미국상담협회의 윤리강령의 경우도 새롭게 SNS와 온라인 상담관련 규정이 추가되었는데 이 때 성관계에 대한 규정을 상담자-내담자뿐만 아니라 슈퍼바이저-슈퍼바이저, 상담교육자-학생간의 관계까지 넓혀서 윤리강령을 강화하였다.

이렇듯 성관련 윤리규정이 보다 강화된 이유는 발제자가 원고에서 밝혔듯이 상담자-내담자의 성관계는 내담자에게 엄청난 상처를 주고 외상으로 남기 때문일 것이다. 발제자가 이야기했듯이 상담자와 성관계를 맺은 21명 중 20명이 외상 후스트레스장애(Post-traumatic stress disorder)를 겪고 있고, 그 중 4명이 자살 시도를 했다는 점은 내담자들에게 상담자와의 성관계는 또 다른 외상적 사건(traumatic event)이라고 할 수 있다. 발제자의 원고에서 볼 수 있듯이, 인지적

기능장애, 감정적 불안정성, 공허함과 소외감, 죄책감, 신뢰능력상실, 성에 대한 혼란 등 다양한 변인과 관련이 되어 있는 상담자-내담자 성관계는 이들을 재제해야 할 한국상담학회와 한국상담심리학회 등을 포함한 상담관련단체의 관계자, 상담실무자, 상담윤리연구자들에게 커다란 도전으로 다가오고 있다. 특히 이러한 상담윤리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이 단순히 상담자의 윤리를 강화시키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제도적, 정책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한국상담자의 성 윤리의식 실태와 내담자 법적 보호 현실”이라는 주제를 선정하고, 여러 발제자와 토론자들이 심층적인 논의를 할 기회를 가지게 된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된다.

토론자인 필자 역시 발제자가 언급했듯이 상담자의 윤리의식 강화를 위해 수퍼비전을 강화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수퍼비전을 통해 상담자가 보다 객관적이 될 수 있으며, 내담자의 전이현상과 자신의 역전이 현상을 성찰할 수 있으리라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발제자가 제안한 수퍼비전 등의 해결방안에 대한 다음의 제도적, 정책적 규정과 지원도 함께 간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1. 수퍼비전을 포함한 **국가차원의 자격증 관리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 발제자가 언급했듯이 상담실무자에게는 수퍼비전이 필수조건이다. 이에 따라 현재 한국상담학회와 한국상담심리학회는 일정의 수퍼비전을 경험한 상담관련 전공 석사 이상의 상담자에게만 자격증을 부여하고 있다. 문제는 이 양대 학회에서 발급하는 자격증이 민간자격증이라는 점이다. 현재 국내의 상담관련 민간자격증은 3,000개가 넘어서고 있다. 이들 3,000개의 자격증을 살펴보면, 지역문화센터, 평생교육원 등에서 10시간 정도의 상담기본교육을 제공하고 자격증을 남발하고 있다. 이번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상담자-내담자 성관계 사건에 연루된 두 상담자의 경우, 한국상담학회와 한국상담심리학회 회원은 아니었지만 3,000개 중 하나의 민간자격증을 소지한 상담자였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사설상담소 관련 어떠한 국가차원의 법령과 제도도 없으며 상담관련 민간자격증이 남발하고 있는 현실에서 단순히 수퍼비전을 major 상담학회차원에서 강화한다고 해도 별반 효과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국가차원의 상담자격증 제도가 요구된다.

2. 상담소 개업에 있어 신고제가 아닌 허가제가 되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설상담소를 개소하는데 있어 어떠한 제도적 재제도 없는 상태이다. 즉, 이전에 아무런 상담관련 공부를 하지 않고, 어떤 상담 자격증도 없는 사람 역시 사설상담소를 마음대로 개소할 수 있다. 필자가 자문교수로 소속되어 있는 사설상담소의 경우 역시 1990년대 후반 처음에 상담소를 개소할 때 “인생상담”이라는 사업종목으로 신고하여 어떠한 제도적 재제 없이 개소하였다.

3. ‘상담자보험’이 의무화되어야 한다. 필자는 미국에서 상담 인턴쉽을 하기에 앞서 가장 먼저 해야 했던 일은 상담자 보험을 드는 일이었다. 상담자 보험은 단순히 상담자만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내담자에게도 중요하다. 상담관련 소송과 벌금 등에 대한 비용을 감당하기 때문이다. 물론 민사소송 등이 상대적으로 적은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과 같이 상담관련 소송이 빈번하게 발생할 가능성은 적더라도 사설상담소의 상담자와 내담자를 위한 보험은 상담자와 내담자 모두를 보호할 수 있는 중요한 요건이라 할 수 있다.

4. 국가차원의 강력한 게이트키퍼(gate-keeping) 제도가 필요하다. 앞서 언급했듯이 국가차원의 상담자격증 제도가 없다보니 성범죄자, 마약, 대마,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 등 역시 사설상담소를 개소할 수 있는 현실이다. 많은 연구자들은 상담실무자에 대한 수퍼비전보다도 오히려 중요한 것이 게이트키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즉, 아무나 상담자격증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 국내의 대학교와 대학원에서는 우후죽순 상담학과를 만들고 매년 만 명 이상의 상담관련 전공자를 졸업시키고 있다. 이에 대한 국가차원의 강력한 재제가 있어야 할 것이다. 적어도 상담관련 전공자 혹은 자격증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 다음의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 |  |
|--|
| 1) 정신질환자. 다만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상담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 2)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3) 미성년자·금치산자·한정치산자</li> <li>4)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li> <li>5)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li> <li>6)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li> <li>7)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li> </ul> |
|--|

5. 상담 활동에 있어 과실(malpractice)에 대한 보다 강력한 징계 및 처벌 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상담자에 대한 법령이 따로 없다보니 상담자에 대한 어떤 징계 및 처벌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그러기에 상담자가 아닌 자가 상담을 하는 활동, 상담자가 상담윤리강령을 위반한 경우 등에 있어 어떠한 징계 및 처벌도 없는 상황이다. 적어도 상담관련 법령을 통해 다음의 징계와 처벌제도가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상담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그 행위를 고려하여 등록취소, 2년 이하의 직무 정지, 1년 이하의 일부 직무 정지, 견책 등을 시행한다.</li> <li>2) 상담사가 아닌 자가 상담 직무를 수행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li> <li>3) 상담사가 아닌 자로서 상담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li> </ul> |
|--|

지난 수년간 상담윤리에 관한 연구가 계속되어지고 있지만, 최근까지도 상담자를 대상으로 한 정확한 전수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나아가 상담윤리와 관련된 제도적, 정책적 개입방법에 대한 체계적이고 경험적인 연구 역시 거의 전무하다. 지금의 상황에서 상담관련 연구자와 실무자인 우리는 스스로에게 “상담실에서 발생하는 윤리적 문제를 어떻게 예방해야 하는가?”, “내담자 나아가 상담자를 보호하는 제도적 보호 장치는 어떻게 마련해야 하는가?”, “국가차원에서 어떻게 상담자 공급과 수요를 예측하고 국민정신건강과 행복을 추구하는데 상담직종이 이바지해야 하는가?” “다양한 상담윤리모형 중 우리나라에 적합한 윤리모형은 무엇인가?”, “어떤 절차를 거쳐 상담윤리 문제를 평가하고 개입해야 하는가?” “나아가

가 상담자 윤리의식을 증진시키는 효과적인 개입 및 교육전략은 무엇인가?” 등의 질문을 던져야 할 것이다. 이들 질문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위의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하려고 한 이승욱 선생님의 발표문은 시기적절한 발제문임을 다시 한 번 상기하게 된다. 그러나 토론자의 무지로 인해 발표의 내용과 의도를 심도 있게 파악하지 못하고 피상적인 토론에 그치고 말게 됨을 죄송하게 생각한다.

이번 포럼의 토론자로 참여하면서, 상담자 윤리에 대한 이해가 점점 높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윤리적, 제도적, 정책적 딜레마가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고 이에 대해 조금이나마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 것에 감사한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상담현장에 종사하거나 상담현장을 연구하는 전문가들은 상담윤리 문제를 단순히 윤리적 차원에서만 파악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제도적, 정책적 차원에서 상담자-내담자 성관계 등을 포함한 상담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윤리문제를 효과적으로 예방, 개입 및 지원, 교육할 수 있는 국가차원의 제도와 모델을 구안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국상담자의 성윤리의식 실태와 내담자 법적 보호 현실”주제를 가지고 상담자-내담자 관계와 윤리 및 제도 문제에 대해서 풍부한 논의의 장을 마련해 주신 정춘숙 의원실, 한국여성심리학회 산하 여성주의 상담연구회,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연구소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 토론 2\_

김보화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 연구소 울림 책임연구원)

## 토론 2

김보화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 연구소 올림 책임연구원)

상담가에 의한 성폭력은 ‘윤리’의 문제가 아니라 젠더 권력관계의 문제이고, 피해를 입지 않을 내담자의 ‘권리’로 이해되어야 한다.

### 들어가며

인간 내면의 심리를 상담, 분석, 치유하는 과정에서의 전이와 역전을 비롯한 심리적 역동은 많은 드라마, 소설 등에서 조명되어 왔고, 때로는 지나치게 낭만화 되는 경향이 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정신분석가와 내담자와의 성적 관계는 흑여 동의나, 합의의 과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내담자의 심리적 취약성과 의존성, 분석가의 우월적 지위, 그들 사이의 사회적, 젠더 권력 관계 등이 결합한 형태이기 때문에, 성폭력적 상황에 노출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2016년 한국에서도 정신분석가/상담가에 의한 성폭력들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상담자의 윤리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미 국내외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었던 문제이며, 상담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권력적 관계에서 성적 폭력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적, 심리적, 문화적 틈새에서 발생합니다.

발제자는 분석가와 내담자와의 성적 전이 문제를 설명하면서 분석가의 덕목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발제자는 “분석가는 내담자의 욕망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기꺼이 받아들여, 분석이라는 시공간에서 가장 안전하게 내담자를 보호해야 한다. 분석가는 자신의 교육 분석 경험과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자신의 심리적 취약 지점을 점검하고 전이-역전이 관계를 깊게 점검해야 한다”고 제시하면서 “문제는 전이의 발생이 아니라, 전이를 다루는 분석가의 방식에 있”다고 지적합니다. 따라서 전이-역전이 관계에서 분석가가 분석관계를 지킬 수 있는 윤리는 두

가지로 압축된다고 말하고 있는데, 첫째는, “분석관계에서 발생한 그 어떤 상황도 모두 분석의 주제여야 한다”는 것이고, 둘째는 “분석가는 내담자로부터 분석료 외의 그 어떤 이득도 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분석가가 이 두 가지 원칙을 지켜내야 내담자는 물론 분석가 자신도 보호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경험과 심리를 재구성하고 분석하여 상처를 치유해야 할 의무와 책임을 가지고 있는 정신분석가/상담가의 윤리와 덕목에 대한 발제자의 의견에 대부분 동의하면서도, 더욱 풍부한 논의를 위하여 몇 가지 질문과 의견을 덧붙이고자 합니다.

### **정신분석가/상담가에 의한 성폭력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이며, 권력적 구조에 대한 성찰이 필요합니다.**

발제자는 “내담자가 정신분석가/상담가에게 극도의 의존성을 보이게 되나 현실에서 누군가를 사랑하고 성관계를 맺을 수 있는 능력과 이를 유지할 수 있는 심리적 구조에 대한 교정은 다른 문제이므로 분석가의 윤리 덕목이 갖춰져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폭력은 개인의 윤리나 덕목만의 문제로 해결되기 어려운 사회구조적인 권력 관계와 궤를 함께 합니다. 특히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은 직장 상사, 군대, 성직자 등 권력 구조가 뚜렷하고,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한 인사, 교육, 훈련, 평가 등을 담당하는 경우 등에서 발생하며, 다른 성폭력 피해에 비해 피해 사실을 드러내는 일이 더욱 어렵습니다.<sup>16)</sup>

정신분석가/상담가의 경우 물리적인 위협과 폭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내담자의 심리적, 정신적 취약함이 전제되어 있는 상태에서 강한 신뢰관계로 얽혀있기 때문에 이미 그 자체로 ‘우월적 지위’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내담자들은 성관계를 요구받거나, 강요에 의해 성관계를 하게 되었다고 해도 그것이 성폭력인지, 아닌지에 대해 판단하는 것 자체에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따라서 단지 정신분석가/상담가 개인의 ‘덕목’과 ‘윤리’에 맡길 것이 아니라 좀 더 사회적 약자에

---

16) 이유정(2015),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의 법률적 검토”, 경찰청, 한국여성변호사회,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범죄 근절 정책 심포지움』, p.54.



게 행해지는 사회구조적인 문제로 받아들여야 하고, 권력적, 우월적 관계가 내포할 수 있는 위험성들에 대한 내부적 고민이 풍부해지기를 바랍니다.

### **상담실에서의 성폭력은 젠더 권력 관계와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발제자는 상담실에서의 성적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정신분석가/상담가 개인의 덕목과 슈퍼비전 등으로 인한 훈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상담실 내 성폭력의 문제는 개인의 윤리, 내담자의 심리적 취약성, 우월적 지위만의 문제만이 아니라 젠더 권력 관계와도 깊은 관련이 있음을 덧붙이고 싶습니다. 2015년 한국 성폭력상담소 상담통계에 따르면, 총 1308건 중에 여성 피해자가 92.2%에 달하는데, 이는 개소이래 비슷한 수치로 가해자와 피해자의 수치는 성별로 엄격하게 구분됩니다. 이것은 남성과 여성이라는 성별 자체가 하나의 권력으로 작동하고 있는 현실을 보여줍니다. 정신분석가/상담가에 의한 성폭력 역시 거의 대부분이 남성 정신분석가/상담가에 의해 여성 내담자가 피해를 입었다는 것은 상담실 역시 '무성적' 공간이 아니며, 아무리 훌륭한 수련을 거친 정신분석가/상담가라 할지라도 한국사회의 가부장적 질서에 포함되어 있는, 왜곡된 성의식을 지닌 사람일 수 있다는 점이 인지되어야 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 등의 의무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 **정신분석가/상담가와 내담자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친밀한 관계에서의 성폭력(Intimate Partner Violence : IPV)의 특징과 관련한 고찰이 필요합니다.**

성폭력 범죄의 보호법익은 성적자기결정권의 침해에 대한 죄입니다. 그러나 상담실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의 경우 성적자기결정권의 침해가 어디까지 증명될 수 있을지 어려운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그렇기에 여러 정신분석가/상담가들이 '합의하에 교제한 것', 더 나아가 '내담자가 먼저 요구한 것', 이라고 항변하기도 하는데, 이는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한 수많은 성폭력 가해자들의 자기 정당화와 닮아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합의'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 꼼꼼이 생각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Bart(1983)는 이성애적 성을 동의적 성(남성, 여성 똑같이 원하는 경우), 이타적 성(여성은 안 된다고 말하는 것에 대해 남성에게 미안하게 느끼거나 죄스럽게 느끼기 때문에 하는 경우), 순응적 성(안함으로써 오는 결과가 함으로써 오는 결과보다 나빠서 하는 경우), 강간으로 나아가는 연속선으로 개념화할 것을 제시합니다. Kelly(1987)는 이에 덧붙여 여러 명의 여성들을 인터뷰한 결과 이타적 성, 순응적 성은 성관계를 갖도록 압력 받는 것과 비슷하고 강제적 성은 '강간 같았다'라는 느낌과 비슷하다고 표현된다고 보고했습니다. 동의적 성과 강간 사이에는 분명한 구분이 없고, 압력, 위협, 강제, 힘의 연속선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sup>17)</sup>

이것은 현재 친밀한 관계에서 성폭력과 성관계의 결을 구분하기 곤란한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더군다나 깊은 라포와 신뢰, 친밀함이 형성되어 있는 정신분석가/상담가와 내담자 관계에서 동의나 합의의 문제는 친밀한 관계에서 성폭력이 구성되는 맥락에 대해서는 읽어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현행법에 따라 피해자가 저항하지 않았고, 폭행, 협박이 없었음을 증거삼아 일부 가해자들은 자신의 성적 행위를 정당화 할 수 있는 기제로 합리화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문제는 내담자가 동의/합의했거나, 거절했음을 넘어 누구에게, 어떤 상황에서, 어떠한 성적 권리가 발휘되거나/발휘될 수 없는가, 우리 사회는 누구의 경험을 우선시키고 있는가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을 되물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미 취약한 심리적, 정신적 상황에서, 우월한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사회적, 성별 권력관계가 강고하게 유지되어 있는 상담가/내담자 관계에서 피해자의 동의/합의 여부나 성적 자기결정권은 성립되기 어려운 상황임을 고려하여 가해자의 항변이 아니라 피해자의 경험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조치가 요구됩니다.

## **상담실에서의 성폭력 문제를 예방, 처리하기 위한 최소한의 약속과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

17) Bart Pauline B. and P. O'Brien(1985), "Stopping Rape Successful Survival Strategies, Pergamon Press, Kelly, L(1987), "It's everywhere : Sexual violence as a Continuum", Hanmer and Maynard eds., Women, Violence and Social Control, London: Macmillan, 심영희(1989), "성폭력의 실태와 법적 통제 : 성폭력의 연속선 개념에 입각하여", 『한국여성학』, 제5권, pp.135-136에서 재인용.

발제자는 “내담자를 보호하기 위해 분석가를 법으로 겁박해야 하는 이 상황은 분석가로서 거부하고 싶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의 의미를 좀 더 함께 고민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월적 지위에 의한 성폭력들 중 친족 성폭력의 경우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아동친족성폭력의 경우 어릴 때부터 심리적, 경제적, 정서적으로 깊은 의존 관계에 있는 친부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해자들은 폭행과 협박을 하기도 하지만, 단지 ‘예뻐해주는 것’이라거나 ‘놀이’라거나, 말을 잘 들으면 ‘사탕 받는’ 정도로 사소화하기도 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지속적으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는 그것을 피해로 인식하지 않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향후 그 행위에 저항하지 못했다는 죄책감 등으로 인해 더욱 심한 트라우마를 경험하는 경우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에서는 이러한 친족 성폭력의 특징을 고려하여 법적으로 더욱 강경한 양형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세상의 모든 아버지를 잠재적 가해자로 간주하여 ‘겁박’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는 경각심을 환기시켜 향후 또 다른 성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한 사회적 약속에 해당합니다. 이는 정신분석가/상담가와 내담자의 관계와도 연결지점이 존재합니다. 내담자를 아동과 비교하려는 것이 아니라, 심리적으로 의존적인 상태에 있는 경우를 이용하여 가해를 저질렀을 경우에 대한 특성을 고려하여 더욱 강한 제도적, 사회적 제재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토론문은 정신분석가/상담가에 의한 성폭력 처벌에 대한 법적 타당성과 정당성, 조항의 구성요건 등에 대한 논의가 주된 요지는 아니며, 또한 모든 성폭력을 엄벌주의적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정신분석가/상담가 집단 내의 합의된 자율적 규제, 즉 상담가들 스스로가 이런 일을 방지하게 위해 어떤 노력을 할 것이고, 어떤 자율적 약속이 필요한가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치과의사 윤리지침에는 “치과의사는 진료과정에서 환자에게 성추행, 성희롱, 성적 유혹 등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국간호사 윤리지침에 “간호사는 대상자를 간호할 때 성적 접촉으로 오인되거나 유도될 수 있는 행동을 피하여야 한다”, “간호사는 취약계층 대상자가 신체적, 정신적, 성적 학대를 받지 않고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감시하고 보호하여야 한다”고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좀 더 취약한 위치에 있는 환자를 배려하고, 그 상황을 존중하고자 비롯된 내부의 자율적 약속이라 볼 수 있으며, 이러한 규칙들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sup>18)</sup>

한국심리학회 윤리규정 제60조 내담자/환자의 성적 친밀성 부분에서 심리학자와 내담자의 성적 관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sup>19)</sup> 그러나 이것은 학회 회원에 한정되어 있으며, 최근 확대되어가고 있는 상담관련 종사자들의 경우는 포함되지 않을 수 있고, 또한 ‘윤리규정’은 심리학자의 ‘윤리’에 대한 문제로 접근하기 때문에, 이를 어기더라도 제재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윤리에의 호소가 아니라 성인식 제고를 위한 예방교육의 의무화, 사건 발생 시 자격 보류, 자격 정지 등 특정 기준 이상의 상담자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내부적 합의와 토론에 기초한 내규가 만들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 **정신분석가/상담가에 의한 성폭력은 ‘윤리’의 문제가 아니라 젠더 권력관계의 문제이고, 피해를 입지 않을 내담자의 ‘권리’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상담실에서의 성과 관련된 문제는 개별 상담사가 갖추어야 할 ‘윤리’의 문제라기보다 권력관계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구조적인 문제이며, 안전하고 건강한 상담을 받기 위한 내담자의 ‘권리’의 측면으로 접근되기를 제안드립니다. 이를 위해서는 법, 제도, 공동체내의 문화와 합의, 개인의 성찰 등 다층적인 변화가 요구될 것입니다.

---

18) 국가인권위원회(2014), 『진료 과정의 성희롱 예방기준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 결과 발표회 및 토론회』, “진료과정 성희롱 예방기준(안)”, p. 55.

19) 제60조 내담자/환자와의 성적 친밀성

1. 심리학자는 치료적 관계에서 내담자/환자와 어떤 성적 관계도 허용되지 않는다.
2. 심리학자는 내담자/환자의 보호자, 친척 또는 중요한 타인과 성적 친밀성을 가져서는 안 된다.
3. 심리학자는 과거 성적 친밀성을 가졌던 사람을 내담자/환자로 받아들이지 않아야 한다.
4. 심리학자는 치료 종결 후 적어도 3년 동안 자신이 치료했던 내담자/환자와 성적 친밀성을 가지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가능하면 치료 종결 3년 후에도 자신이 치료했던 내담자/환자와 성적 친밀성을 가지지 않는다.

출처: 한국심리학회 홈페이지,

<http://www.koreanpsychology.or.kr/aboutkpa/article.asp?page=4>

또한 상담실을 찾아오는 내담자는 언제나 심리적으로 의존적이고 취약한 존재인 것만이 아니라, 오히려 스스로 심리적인 문제가 있다고 인식하는 주체적이고, 건강한 마음을 지니고 있음을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성적 트라우마를 가지고 상담실을 찾아온 내담자가 또 다시 성폭력 피해를 입고, 그것이 발제자의 부록에 제시된 것처럼 심각한 트라우마를 가지고 온다고 하더라도, 성폭력 피해자는 수동적인 존재만이 아니라 혼란 속에서도 적극적으로 문제제기할 수 있는 용기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랫동안 성적 트라우마를 연구해 온 정신과 전문의 정국 교수의 말대로 “성폭력 피해자는 그 몹쓸 경험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바로 그 경험 ‘때문에’ 풍부한 감수성과 창의성, 그리고 깊고 넓은 영혼을 지닌 특별한 사람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sup>20)</sup>음을 다시 한 번 떠올려 봅니다. 오늘 논의의 자리가 정신분석가/상담가에 의한 성폭력 문제를 사회적으로 환기하고, 이를 예방하고 처리하기 위한 제도적, 문화적 모색의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참고 문헌

- 국가인권위원회(2014), “진료과정 성희롱 예방기준(안)”, 『진료 과정의 성희롱 예방기준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 결과 발표회 및 토론회』 자료집.
- 심영희(1989), “성폭력의 실태와 법적 통제 : 성폭력의 연속선 개념에 입각하여”, 『한국여성학』, 제5권.
- 이유정(2015),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의 법률적 검토”, 경찰청, 한국여성변호사회,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범죄 근절 정책 심포지움』 자료집.
- 정국(2012), 『섹슈얼 트라우마』, 블루닷.

---

20) 정국(2012), 『섹슈얼 트라우마』, 블루닷, p.20.

## 토론 3\_

인훈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 검사)

## 토론 3\_

인훈 (서울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 검사)

### 1. 들어가며

안녕하십니까 저는 2016. 1.부터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에서 성폭력, 학교폭력 등 전담을 맡고 있는 인훈 검사라고 합니다. 이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발표자분들께서 바쁘신 중에도 상담실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폭력 범죄에 대하여 그 발생 원인과 여러 가지 법적 문제 등에 대하여 깊이 있게 고민하시고 체계적으로 정리, 발표하여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위 발표문들을 보면서 저 또한 이 부분 상담자와 내담자 사이의 성범죄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내담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 범죄는 정신적, 심리적으로 충격, 상처를 받거나 더 개선시키기 위해 병원, 상담소 등을 방문하였다가 오히려 추가적인 피해를 가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2차 피해에 놓이게 하는 매우 위중한 범죄이고 강력하게 처벌해 마땅하다는 점에 있어서 찬성하는 바입니다.

저희 검사실에서도 지난 6. 30. 심리 상담소를 운영하면서 내담자 11명을 상대로 명상 치료를 한다는 명목으로 포옹을 하면서 피해자들의 허벅지, 엉덩이 등을 만진 상담사 강모씨에 대하여 형법상 강제추행, 아동법상 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한 바 있었습니다. 해당 피고인은 이미 성폭력 범죄로 2회에 걸쳐 처벌된 전력이 있고 출소한 지 2년도 채 지나지 않아 다수의 여성 피해자들을 상대로 자신의 성적 욕망을 채워온 것으로 밝혀져 위 상담사를 법원에 구속기소하면서 전자발찌까지 청구하였습니다(위 사건이 언론보도 된 후 그 동안 피해를 호소하지 못했던 추가 피해자가 최근 고소장을 제출하여 현재 서초경찰서 수사 중임).

참고로 본 토론문에 제시된 의견은 검찰 전체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공식적

인 견해가 아닌 제 개인적인 의견임을 밝혀 두는 바이며 본 건 발표문제 대하여 간단히 질문과 의견 개진을 하고자 합니다.

## 2. 질문

임주환 발표자님께서 현행 성폭력 처벌 조항들과 최근 판례의 동향을 체계적으로 정리, 발표해주셔서 발표자님의 발표문만으로도 개인적으로 향후 수사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 저 또한 발표자 분의 의견에 대체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특히 발표문 중 상담자와 내담자 사이의 ‘전이’에 의한 강한 의존관계를 준강간 내지 준강제추행의 구성요건인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로 이론구성하는 것은 향후 실무에서도 시사하는 바가 클 것 같습니다.

이에 덧붙여 발표자께서는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별법 제10조에 상담자와 내담자 사이의 심리적 의존관계를 이용한 성범죄를 신규로 추가, 개정하는 것에 대하여 의견 개진하신 바 있습니다.

법 개정도 한 방편일 수 있으나, 현행 법령 안에서 즉, 위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 해석론과 더불어 형법 제303조 제1항<sup>21)</sup> 중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의 관계를 넓게 해석할 여지 및 기습추행의 확대 해석 등의 방법도 있어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한 발표자의 견해는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 3. 의견

현행법 규정상 상담소 개설을 원할 경우 관할 구청에 단순히 신고함으로써 상담소를 개설, 운영할 수 있고, 위 강 모 씨 사안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강 모 씨는 성폭력 범죄로 무려 2회에 걸쳐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아무런 법적 제재 없이 버젓이 서울 도심 한복판에 심리치료상담소라는 간판을 내걸고 다수의 내담자들을 상대로 상담을 해왔습니다.

---

21) 제1항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간음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56조 취업제한 규정에 의하면 성폭력 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 유치원, 학교, 학원,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쉼터, 성매매피해상담소, 의료기관, 체육시설,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 등에 대한 취업이 일정 기간 제한되고 있으나, 그 이외에 예컨대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상담센터 같은 곳은 취업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아무런 제한 없이 상담소를 개설, 운영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제한 규정의 신설 또는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 **4. 소결**

여기서 논의된 말씀과 내용을 잘 정리하여 같이 근무하는 검사님들께 소개하고 향후 성폭력 범죄 수사와 공소유지를 할 수 있는 토대로 삼겠습니다.

나아가 이런 기회를 통하여 저희 검사들이 일선 전문가들로부터 좋은 제언을 많이 경청하여 이해의 폭을 넓히고, 상호간 발전적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갈 수 있었으면 합니다.

또한 저희 검찰 내 커뮤니티를 통해 전문지식의 교류와 나눔의 장이 되고, 피해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 상담가의 성윤리의식 실태와  
내담자 법적 보호 현실 토론회**

발행일: 2016년 9월 7일

발행처: 국회의원 정춘숙 의원실,

한국여성심리학회 산하 여성주의상담연구회,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 연구소 올림